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 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(사기)(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)

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7. 2010고합1152,2010고합1215(병합),2010고합1446-1(분리,병합),2010고합1657(병합),2010고합1669(병합),2010고합1670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3인

【검 사】정원두 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3인

【주문】

피고인 1을 징역 10년, 피고인 2를 징역 3년, 피고인 3을 징역 10월, 피고인 4(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)를 징역 5년 및 벌금 550,000,000(오억 오천만)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,0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다만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4로부터 550,000,000(오억 오천만)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,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의점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상환기일 연장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의점은각 무죄.

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의 점,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의 점 및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"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..." (판례, 2010고합1152,2010고합1215(병합),2010고합1446-1(분리,병합),2010고합1657(병합),2010고합1669(병합),2010고합1670(병합))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